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9. 7. 5 조례 제3094호 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돌봄 아동"이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,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.
- 2. "다함께 돌봄"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 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.
- 3. "돌봄 서비스"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,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돌봄 시설"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,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함께 돌봄 지원)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
 - 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 - 3. 돌봄 민·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)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구,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.

- 제6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·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-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제7조(돌봄 시설 위탁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,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·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·자문
 - 2.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
 - 3.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
 - 4.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9조(지역돌봄협의체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

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경기도안양·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 공무원, 돌봄 시설 관계자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- ④ 협의체는 민·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수당 등)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>
- 제13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②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"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"를 "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②5 부터 86 까지 생략